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51
----------	-----

2022년 11월 2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년 11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가. 제안이유

-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2023년 3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할 위탁 운영 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사무명: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

□ 민간위탁 필요성 및 추진 근거

-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처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위탁사무 내용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
- 소각,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생산·판매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일반사무처리
-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 시설 개요

- 시설명: 강남자원회수시설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 부지면적: 63,818 m^2
- 시설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900톤/일(300톤/일×3기)
- 처리권역: 8개 자치구(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

- 주용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 자원화
- 주요장비: 소각설비, 소각재처리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 위탁기간: 3년('23. 4. 1. ~ '26. 3. 31.)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01.12.28.~'04.12.27. (3년, SK건설(주))
- 2차 : '04.12.28.~'07.12.27. (3년, 한국시거스(주), 현대모비스(주))
- 3차 : '08.01.01.~'10.12.31. (3년, 한국시거스(주), 한라산업개발(주))
- 4차 : '11.01.01.~'13.12.31. (3년, 한국시거스(주))
- 5차 : '14.01.01.~'17.03.31. (3년, 한국시거스(주))
- 6차 : '17.04.01.~'20.03.31. (3년, 한라산업개발(주))
- 7차 : '20.04.01.~'23.03.31. (3년, 한라산업개발(주))

□ 수탁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2. 10. 10.)

□ 소요예산(비정산비 기준): 21,342백만원('23.4.~'26.3.)

(1차년도: 6,905백만원, 2차년도: 7,112백만원, 3차년도: 7,325백만원)

□ 기대효과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피재황)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23.3.31.)로 인한 재위탁(공개모집)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 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검토 의견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1)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1)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기업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2]

강남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및 열생산
----------	------------------

□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제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시설 위치도와 제7호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1. 위탁사무명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3. 위탁사무 내용 |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 5. 민간위탁기간 | 6. 수탁자 선정방식 |
|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은 2022년 9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²⁾으로 심의한 바 있음.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공모)사업의 경우,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2)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자원순환과)(조직담당관-27419, '22.10.10.)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비고
자원순환과	강남자원 회수시설	예산지원형 /재위탁 (공모)	3년	적정 (권고)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필요

□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상 개선요청사항 요약

- **조직 및 인력 운영:** 조직 구성원들의 높은 전문성과는 별개로 화합, 상하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경직된 측면이 있어서 분위기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대부분의 퇴직 또는 이직이 연차가 낮은 직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법정 의무교육 실시, 정기재물조사, 직원 임금 지급 및 증빙자료 처리 등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된 바 있고, 사내비상연락망 현행화, 입찰 시 변경된 참가자격 미보고, 통로 물건 적치, 물품구매 검수 조서 증빙서류 미흡 등이 지적되는 등 매년 시행되는 점검에서 3~4건씩 지적이 발생하는 것은, 전체 관리체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관리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소각시설 가동률:** 소각시설 설계·시공 전문업체인 벨기에 케펠 시거스의 의견에 따라 안전율을 90~92%로 고려하여 소각량을 설정·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고열량 플라스틱 폐기물 반입량이 늘어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해 가동률이 조정됨에 따라 소각량 목표 달성률이 2020년 95%, 2021년 93%, 2022년(1~2월 실적 기준) 86%로 매해 낮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종합 의견(결론)**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추후 제출된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와 내용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직 운영,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시설 가동률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가동률 향상을 위한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의 다양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1
----------	-----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23. 3. 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나.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처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 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 필요성

-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
- 소각,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생산·판매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일반사무처리
-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라. 시설개요

- 시설명 : 강남자원회수시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 부지면적 : 63,818 m^2
-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900톤/일(300톤/일 × 3기)
- 처리권역 : 8개 자치구(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 주 용 도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하여 자원화
- 주요장비 : 소각설비, 소각재처리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마. 위탁기간 : 3년 ('23.04.01. ~ '26.03.31.)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01.12.28.~'04.12.27. (3년, SK건설(주))
- 2차 : '04.12.28.~'07.12.27. (3년, 한국시거스(주), 현대모비스(주))
- 3차 : '08.01.01.~'10.12.31. (3년, 한국시거스(주), 한라산업개발(주))
- 4차 : '11.01.01.~'13.12.31. (3년, 한국시거스(주))
- 5차 : '14.01.01.~'17.03.31. (3년, 한국시거스(주))
- 6차 : '17.04.01.~'20.03.31. (3년, 한라산업개발(주))
- 7차 : '20.04.01.~'23.03.31. (3년, 한라산업개발(주))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사. 소요예산(비정산비 기준) : 21,342백만원('23. 4.~'26. 3.)
(1차년도 : 6,905백만원, 2차년도 : 7,112백만원, 3차년도 : 7,325백만원)

아. 기대효과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자.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2.10.1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관리팀 신경진 (☎2133-4471)